

2022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서

- 심의일자 : 2022. 11. 30.(수)
- 심의안건 : 67건 (규제 개선 4건, 규제 존치 63건)
- 심의결과 :

의안 번호	제출 부서	규제사무 안 건 명	개선 및 존치 필요성	심의결과
1	노 인 장애인과	공 설 묘 지 사용허가 취소 (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)	▶ 규제 개선(폐지) <2020. 7. 6. 조문 삭제>	원안가결
2	도로시설 관 리 과	변상금 부과 (여수시 도로점용료 등징수 조례 제2조)	▶ 규제 개선(폐지) <2021. 8. 10. 조문 삭제>	원안가결
3	교 통 과	면 허 신 청 거 주 여 건 (여수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규칙 제6조)	▶ 규제 개선(완화) <면허신청 거주요건에 대해 타지역보다 과도 하게 제한하고 있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추진함> (2022.7.7.개정)	원안가결
4	허 가 민 원 과	일조등의 확보 를 위한 건축물 의 높이 제한 (여수시 건축 조례 제 3 4 조)	▶ 규제 개선(완화) <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물의 각 부분의 높이 제한을 완화 추진> (2022.11.30.개정)	원안가결
5	교 통 과	주 차 구 획 의 설 치 운 영 (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 9 조)	▶ 규제 존치 <인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긴급 자동차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밀집지역 등 인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존치 필요>	원안가결
6	교 통 과	부설주차장 의 장 애 인 전용주차구획 (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21조)	▶ 규제 존치 <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존치 필요>	원안가결

의안 번호	제출 부서	규제사무 안 건 명	개선 및 존치 필요성	심의결과
7	기 후 생 태 과	개 선 조 치 등 의 명 령 (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 6 조)	▶ 규제 존치 <상위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등으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을 위해 존치 필요>	원안가결
8	기 후 생 태 과	가 축 사 육 제 한 지 역 (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 4 조)	▶ 규제 존치 <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한 범위와 자치 단체에서 수질환경 및 생활환경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9	기 후 생 태 과	유 료 화 장 실 운 영 자 준 수 시 향 (여수시 공중화장 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)	▶ 규제 존치 <상위법령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임>	원안가결
10	노 인 장 애 인 과	복 지 관 의 사 용 허 가 (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)	▶ 규제 존치 <위탁운영 시말물 유지관리 및 사용자 목적확인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>	원안가결
11	노 인 장 애 인 과	신 청 (여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 5 조)	▶ 규제 존치 <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을 할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장애인, 국가유공자임을 확인 할수 있는 자격 서류 기준이 필요>	원안가결
12	노 인 장 애 인 과	묘 지 등 의 설 치 제 한 지 역 (여수시 장사 등의 관한 조례 제5조)	▶ 규제 존치 <붕괴·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묘지설치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>	원안가결
13	노 인 장 애 인 과	노 인 전 문 요 양 시 설 입 소 대 상 (여수시 노인요양 시설 운영 및 관 리에 관한 조례 제 5 조)	▶ 규제 존치 <상위법령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대상자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존치필요>	원안가결
14	노 인 장 애 인 과	시 설 퇴 소 (여수시 노인요양 시설 운영 및 관 리에 관한 조례 제 6 조)	▶ 규제 존치 <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노인여가 복지시설 이용대상자의 이용절차 규정을 정한 것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
의안 번호	제출 부서	규제사무 안 건 명	개선 및 존치 필요성	심의결과
15	도 시 계 획 과	토지분할 허가 제한 등 (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)	▶ 규제 존치 <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부동산 투기 등 소유자간 분쟁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>	원안가결
16	도 시 계 획 과	개발진흥지구 안에서 받지 아니 하는 건축물 등 (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)	▶ 규제 존치 <개발진흥구역안에서의 건축 할수 있는 건축 물을 추가로 완화할수 있는 완화 규정>	원안가결
17	도 시 계 획 과	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 하는 건축물 등 (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)	▶ 규제 존치 <체계적인 보전과 개발의 유도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대상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>	원안가결
18	도 시 계 획 과	경관계획서 제출 (여수시 경관 조례 제7조)	▶ 규제 존치 <경관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확인을 위한 필요 사항>	원안가결
19	도 시 계 획 과	도로 등이 미설 치된 지역에서 의 건축물의 건축 (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)	▶ 규제 존치 <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완화 규정>	원안가결
20	도 시 계 획 과	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 (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)	▶ 규제 존치 <체계적인 보전과 개발의 유도를 위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을 정하는 사항임>	원안가결
21	도 시 미 화 과	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(여수시 폐기물관리 에 관한 조례 제11조)	▶ 규제 존치 <상위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>	원안가결
22	도 시 미 화 과	임용 자격 (여수시 환경미화원 고용근무규칙 제3조)	▶ 규제 존치 <청소인부 청소차 운전원에 대한 최소한의 임용자격을 명시한 사항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23	도 시 미 화 과	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(여수시 폐기물관리 에 관한 조례 제14조)	▶ 규제 존치 <상위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>	원안가결

의안 번호	제출 부서	규제사무 안 건 명	개선 및 존치 필요성	심의결과
24	도 시 재 생 과	수 수 료 (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)	▶ 규제 존치 <상위법에서 위임한 수수료 규정으로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존치 필요함>	원안가결
25	도 시 재 생 과	연장신고 대상 광 고 물 등 (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)	▶ 규제 존치 <문화적 보전가치 등 특화경관지구안에서 최소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필요한 규정>	원안가결
26	도 시 재 생 과	변경신고 대상 광 고 물 등 (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조)	▶ 규제 존치 <체계적인 보전과 개발의 유도를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규정>	원안가결
27	도 시 재 생 과	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서류 제출 등 (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조)	▶ 규제 존치 <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존치 필요>	원안가결
28	문 화 예 술 과	지 정 해 제 (여수시 문화유산보호 관리 조례 제10조)	▶ 규제 존치 <향토의 역사, 예술, 학술 및 경관적으로 보존, 보호, 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·무형 문화재의 보호,관리를 위해 존치 필요>	원안가결
29	문 화 예 술 과	양도 등의 금지 (여수시 폐기물관리 에 관한 조례 제9조)	▶ 규제 존치 <예술인촌운영관리 수탁자가 양도 금지 또는 협약 해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로 추후 발생할 상호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 고자 하는 규정>	원안가결
30	미 래 농 업 과	분석결과의 광 고 등 의 금 지 (여수시 농업기술센 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 례 제 7 조)	▶ 규제 존치 <토양분석 결과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기 위해 존치 필요>	원안가결
31	미 래 농 업 과	분석의 거부 (여수시 농업기술센 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 례 제 5 조)	▶ 규제 존치 <토양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 토양 분석 서비스 제공에 차질 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존치 필요>	원안가결

의안 번호	제출 부서	규제사무 안 건 명	개선 및 존치 필요성	심의결과
32	미 래 농 업 과	공 급 제 한 (여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 례 제 9 조)	▶ 규제 존치 <유용미생물의 영리목적 사용이나 오남용 등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치 필요>	원안가결
33	산 림 과	대 부 취 소 (여수시 시유임야관리 운영 규정 제41조)	▶ 규제 존치 <시유임야의 대부허가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 하고 과도한 산림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존치 필요>	원안가결
34	산 림 과	대 부 또는 사 용 허 가 (여수시 시유임야관리 운영 규정 제29조)	▶ 규제 존치 <시유임야의 무분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 및 산림훼손 등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제한규정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35	상수도과	하자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징 수 (여수시 상수도 원인 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 례 제 15 조)	▶ 규제 존치 <급수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공사를 할 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시민에게 비용을 전가 시키지 않기 위한 필요한 규정>	원안가결
36	상수도과	신 고 (여수시 수도급수 조 례 제 20 조)	▶ 규제 존치 <수도업자가 관리하는 수도설비를 사용하고자 할때 신고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필요 규정>	원안가결
37	상수도과	원인자 부담금 징 수 (여수시 상수도 원인 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 례 제 7 조)	▶ 규제 존치 <원인자가 발생하여 향후 수도시설에 영향을 준다면 원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필요 규정>	원안가결
38	상수도과	급수공사의 승 인 (여수시 수도급수 조 례 제 6 조)	▶ 규제 존치 <급수시설 비용부담 및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필요 규정>	원안가결
39	상수도과	급수장치의 철폐 (여수시 수도급수 조 례 제 47 조)	▶ 규제 존치 <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관리에 따라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가 불가피 할 때 급수설비 철폐가 필요한 규정>	원안가결

의안 번호	제출 부서	규제사무 안 건 명	개선 및 존치 필요성	심의결과
40	상수도과	급수정지 처분 (여수시 수도급수 조 례 제 43 조)	▶ 규제 존치 <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관리에 따라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가 불가피 할 때 급수중단이 필요한 규정>	원안가결
41	생활자원 사 업 소	자 격 요 건 (여수시 폐기물처리 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및 부무규정 제4조)	▶ 규제 존치 <자치법규에 따라 응시연령을 완화하는 조건 개정이 필요한 규정> (2023년 완화개정 추진)	원안가결
42	수도행정과	급 수 공 사 대 행 업 자 (여수시 수도급수 조 례 제 10 조)	▶ 규제 존치 <급수공사 및 긴급 누수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 지정해야할 필요한 규정>	원안가결
43	수도행정과	급수공사대행업자 지 정 기 준 (여수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시행규칙 제4조)	▶ 규제 존치 <상수도 신설공사와 개조·수선 등 급수 관련 공사 및 긴급누수 복구공사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지정 기준이 필요한 규정>	원안가결
44	수도행정과	수도공사대행업자 결 격 사 유 (여수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시행규칙 제5조)	▶ 규제 존치 <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에 대한 사항 으로 신의와 책임성을 가지고 위임 공사를 수행할 자격을 검토하는 과정 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45	수도행정과	수 도 공 사 대 행 정 지 (여수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시행규칙 제9조)	▶ 규제 존치 <수도급수공사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불성실한 업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규정>	원안가결
46	수도행정과	수도공사 대행 지 정 취 소 (여수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시행규칙 제10조)	▶ 규제 존치 <수도급수공사 대행업소로의 자격요건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존치 필요>	원안가결
47	수도행정과	공 사 의 정 지 제 시 공 명 령 (여수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시행규칙 제12조)	▶ 규제 존치 <수도급수공사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불성실한 업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규정>	원안가결
48	시립도서관	회원자격 상실 (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시행규칙 제 7 조)	▶ 규제 존치 <도서관 회원자격 상실 요건 및 재가입 제한규정 명시를 통해 회원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원활한 자료관리를 위해 존치 필요>	원안가결

의안 번호	제출 부서	규제사무 안 건 명	개선 및 존치 필요성	심의결과
49	여성가족과	사 용 허 가 (여수시 청소년수련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 7 조)	▶ 규제 존치 <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물 보호 및 적절한 유지 관리와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 안전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필요한 규정>	원안가결
50	지역경제과	사 용 자 의 신 고 의 무 (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3조)	▶ 규제 존치 <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의 주소 변경 및 사용해지 등 신고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51	지역경제과	사 용 허 가 의 취 소 와 사 용 제 한 (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7조)	▶ 규제 존치 <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우리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52	지역경제과	영 업 시 간 의 제 한 (여수시 유통업 상생 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)	▶ 규제 존치 <상위법에 의거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존치 필요>	원안가결
53	지역경제과	사 용 권 의 양 도 등 금 지 (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9조)	▶ 규제 존치 <상위법에 의거 우리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54	지역경제과	사 용 허 가 (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5조)	▶ 규제 존치 <상위법에 의거 우리시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55	체육지원과	이 용 허 가 (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)	▶ 규제 존치 <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익 제공 및 시민이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 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규정>	원안가결
56	총 무 과	공무원 특수직급 시험의용사에 필요 한 자격증 기준 (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)	▶ 규제 존치 <공무원의 직무특성상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실시하는 자격 기준이 필요한 분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57	총 무 과	공 무 원 용 시 연 령 (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9조)	▶ 규제 존치 <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과 행정안전부 인사규칙 표준 안에 따르고 있어 존치 필요>	원안가결

의안 번호	제출 부서	규제사무 안 건 명	개선 및 존치 필요성	심의결과
58	총 무 과	기록물 열람 및 대출의 제한 (여수시 기록관 운영 규정 제 26 조)	▶ 규제 존치 <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열람·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59	특 산 품 과 유 통 과	보증금 납부 (여수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업무 규정 제 8 조)	▶ 규제 존치 <위탁출하자에 대한 안정적인 대금지급 수단 및 도매시장 법인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규정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60	하수도과	시장의 공사시행 (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 13 조)	▶ 규제 존치 <시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해 배수시설 설치의무자 비용징수 기준을 설정하여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61	하수도과	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(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 22 조)	▶ 규제 존치 <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62	하수도과	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(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 23 조)	▶ 규제 존치 <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63	허가민원과	건축신고 대상 (여수시 건축 조례 제 18 조)	▶ 규제 존치 <건축법에 의거 건축신고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중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규정 한것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64	허가민원과	건축공사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 기준 (여수시 건축 조례 제 17 조)	▶ 규제 존치 <건축법에 의거 공사중 중단현장 및 장기 방치 건축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확보를 위해 존치 필요>	원안가결
65	허가민원과	건축물의 대지가 지역·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(여수시 건축 조례 제 30 조)	▶ 규제 존치 <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 발생을 예방 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 및 관리 하기 위한 규정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
66	허가민원과	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(여수시 건축 조례 제 20 조)	▶ 규제 존치 <건축법 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은 건축 허가 대상이나, 건축조례로 정하는 대상은 축조신고로 처리가 가능한 조항으로 민원 인의 편익을 위해 존치 필요>	원안가결

의안 번호	제출 부서	규제사무 안 건 명	개선 및 존치 필요성	심의결과
67	허가민원과	현장조사업무의 대 행 범 위 (여수시 건축 조례 제 2 2 조)	▶ 규제 존치 <건축현장의 확인업무는 건실한 건축공사를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에게 대행 하게 함이 타당하며, 대행업무 절차상관련 서류제출 의무등 업무목적상에 의거 필요한 절차 규정으로 존치 필요>	원안가결